

2025년도 글로벌 팁스(사업화) 창업기업 모집공고

해외투자자와 연계하여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『2025년도 글로벌 팁스(사업화)』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.

※ 본 공고는 **글로벌 팁스(사업화)**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하는 **공고문**이며, **팁스R&D(글로벌 트랙)**과는 **별도 사업**이니, **유의**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30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K-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.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① 실명등록 대상 : 개명인, 외국인,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
- ② 실명등록 경로 : www.siren24.com (☎1577-1006) * 실명 등록에 최대 3일 소요

☞ K-Startup 누리집 > 고객센터 > 일반매뉴얼 > K-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「글로벌 팁스」 '협약 체결 약속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

사업개요

- ☐ **사업목적** : 해외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도모
- ☐ **지원대상** : 해외 VC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법인 설립·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
 - * 신산업 분야인 경우 업력 10년 기업까지 지원 가능
 - ** 신청자격은 동 공고 '3. 신청자격 및 요건' 참조
- ☐ **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(총 3년, 1년 단위 협약)
- ☐ **선정규모** : 30개사 내외

□ **협약기간** :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(총 3년, 1년 단위 협약)

□ **지원내용** : 사업화 자금 및 글로벌 현지 진출 프로그램 등

구분	지원 세부 내용														
사업화 자금	• 시제품 제작, 지재산 취득, 사업모델 (BM)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(평균 1.9억원) 지원 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 • 총사업비 = 정부지원사업비 70% 이하 + 자기부담사업비* 30% 이상 * 자기부담사업비 (30% 이상) : 현금 10% 이상 + 현물 20% 이하 **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,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														
	<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(정부지원사업비 1억 4,000만원인 경우) >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 rowspan="2">총사업비</th><th rowspan="2">정부지원사업비</th><th colspan="2">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</th></tr><tr><th>현금</th><th>현물</th></tr><tr><td>100%</td><td>총사업비의 70% 이하</td><td>총사업비의 10% 이상</td><td>총사업비의 20% 이하</td></tr><tr><td>2억원(100%)</td><td>1억 4,000만원(70%)</td><td>2,000만원(10%)</td><td>4,000만원(20%)</td></tr></table>	총사업비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현금	현물	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2억원(100%)	1억 4,000만원(70%)	2,000만원(10%)	4,000만원(20%)
	총사업비			정부지원사업비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										
		현금	현물												
100%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10% 이상	총사업비의 20% 이하												
2억원(100%)	1억 4,000만원(70%)	2,000만원(10%)	4,000만원(20%)												
창업 프로그램	•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제공														
	<table><tr><th>프로그램(예시)</th><th>지원내용</th></tr><tr><td>현지진출 실무교육</td><td>• 진출국가별 창업 트렌드 및 진출 전략, 글로벌 VC의 투자 동향, IR피칭 스킬 등 교육</td></tr><tr><td>선배기업 멘토링</td><td>• 현지 진출한 선배기업의 특강 및 상담 등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, 1:1 멘토링 추진</td></tr><tr><td>글로벌 네트워킹</td><td>• 현지 진출기업 및 협업 파트너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 및 협업 방안 모색</td></tr><tr><td>후속 투자유치</td><td>• 글로벌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밋업데이, IR개최 등 해외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</td></tr></table>	프로그램(예시)	지원내용	현지진출 실무교육	• 진출국가별 창업 트렌드 및 진출 전략, 글로벌 VC의 투자 동향, IR피칭 스킬 등 교육	선배기업 멘토링	• 현지 진출한 선배기업의 특강 및 상담 등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, 1:1 멘토링 추진	글로벌 네트워킹	• 현지 진출기업 및 협업 파트너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 및 협업 방안 모색	후속 투자유치	• 글로벌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밋업데이, IR개최 등 해외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				
	프로그램(예시)	지원내용													
	현지진출 실무교육	• 진출국가별 창업 트렌드 및 진출 전략, 글로벌 VC의 투자 동향, IR피칭 스킬 등 교육													
	선배기업 멘토링	• 현지 진출한 선배기업의 특강 및 상담 등을 통한 경험을 공유하고, 1:1 멘토링 추진													
글로벌 네트워킹	• 현지 진출기업 및 협업 파트너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정보 교류 및 협업 방안 모색														
후속 투자유치	• 글로벌 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밋업데이, IR개최 등 해외 후속 투자유치 기회 제공														

□ 신청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에 따른 모집공고일 기준 **창업 7년 이내인 창업기업** 중,

※ 「(참고4) 신산업 창업 분야」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의 경우, 업력 10년까지 신청 가능
 - 해외 VC로부터 30만 불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, 해외법인 설립*·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

*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은 ① 신청 시 해외법인 보유, ② 미설립 시 1차년도 협약기간 종료 시까지 해외법인 등 설립

◆ 신청가능 창업(설립)일 기준 : 2018년 5월 31일 이후 창업한 기업

- 창업일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'회사성립연월일' 기준이며, 신청 시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경우로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(지점은 신청 불가)
- 창업기업 여부 판단 관련 「(참고1) 창업여부 기준표」 참고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대표자 전원이 '신청자격'에 해당되고, '신청 제외 대상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신청 가능
-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보유한 경우, 동 사업 신청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
- 해외법인은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 2의2.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국외 창업 요건을 준용하고,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설립한 기업

□ 해외VC(투자사) 및 투자 요건

- 본사 소재지가 한국이 아닌 국외이자, 투자 주체가 해외VC 및 역외펀드이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
- 우대요건 : ① 한국 지사·사무소 보유, ②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'해외 VC 글로벌' 펀드 투자사, ③ 해외 펀드 운용실적 및 전문 인력 현황 보유

□ 투자 요건

※ 투자방식 등은 요건검토 시 적정성 여부 판단 예정

- 글로벌 팁스 사업신청 창업기업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외 VC로부터 30만불 이상 투자

◆ 투자금 납입일 기준 : 2022년 5월 31일 이후 (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)

- 투자금은 해외VC 투자금액의 총 합산액 (미국달러 USD 기준)으로, 국내VC가 투자한 금액은 미인정
- * 미국달러(USD)가 아닌 他 통화일 경우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 매매 기준을 적용 (예 : 엔(¥) → 달러(\$))
- 투자형태는 신규 투자만 인정 (기존지분 인수 등 혼합투자 불인정)
- * 본사가 국외 소재인 해외VC에서 직접 투자 또는 해외VC가 운용하는 역외펀드에서 투자한 경우 인정

□ 신청 제외 대상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

< ①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
2.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,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
3.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,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
4. 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의 '재도전·재창업 재기지원보증'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신용회복위원회의 '재창업 자금지원'을 받은 자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

< ②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
2. 국세·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

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(기업)

< ③ 조건 예외 대상 (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기준) >

1. 사업 신청·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
2.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
3.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 (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 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)

④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 ([참고2]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)

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‘글로벌 창업 지원사업’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, [참고3] 참고 ※ 중단 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「2025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6호)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

** 단, 공고사업과 ‘동일연도’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

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(기업)

⑦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·폐업 중인 자(기업)

⑧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(기업)

*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·등록이 되지 않은 자 (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, 가상화폐 거래소업, 가상화폐 개발업,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)

⑨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, 전담/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

⑩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(기업)

⑪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)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(기업)

⑫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의무 및 역할

- 선정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 및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
*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

-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(현금)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,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-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, 사업비의 유용·횡령·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(선정자)에게 있고,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
4

접수방법

□ **접수 기간** : '25. 5. 30.(금) ~ 6.20.(금), 16:00까지

< 유의 사항 >

-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**마감일 2~3일 이전에 'K-Startup 누리집' 가입 및 사업 신청**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
 - * 신청·접수는 **16:00 정각에 종료** (신규 신청 불가). 다만, 16:00 전에 1단계(약관동의)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, 18:00까지 작성 항목 수정, 사업 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
-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**'제출완료' 버튼을 클릭**해야 **최종 접수가 완료**됨
- ③ **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**하고, 접수된(18:00이후)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**수정 및 삭제 불가**

□ **접수방법**

○ K-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·접수 (www.k-startup.go.kr)

- 신청·접수 시, K-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 **실명인증** 및 ② **기업 인증**을 실시하여야 하며, 사전에 **회원가입** 및 **실명인증** 필요

* **실명인증** : 서울신용평가정보(SCI)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(외국인, 개명인,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,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)

** **기업인증** : 공동인증서(기업용), 금융인증서, SCI기업실명인증,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

***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'[붙임3] 사업 신청 매뉴얼' 참고

< 유의 사항 >

- ① **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**해야 하며, **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**
- ② K-Startup 누리집 **신규 가입** 시, 아이폰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**본인 인증 필수**. **서울신용평가정보(SCI)**에 실명(개명)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K-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

□ 제출서류

○ 사업계획서 1부

- [붙임 1] 양식 활용하고,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기타 제출서류 각 1부

- [붙임 2] 양식 활용하고, 서류 목록 순으로 제출

구분	제출서류	제출방법	비고
공통	① 사업신청서	온라인 입력	※ <u>사업계획서 외 다른 서류는 기업명 증빙 서류.zip</u> 으로 압축 후 제출
	② 사업계획서	파일 첨부 (PDF)	
	③ 사업자등록증		
	④ 법인등기부등본		
	⑤ 투자계약서·투자금 납입내역		
	⑥ 주주명부		
	⑦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	
	⑧ 사업자등록증명원 * 신청기업외 '계속' 사업자 보유 시 필수		
	⑨ 휴·폐업사업사실증명원 * 총사업자 등록내역상 '휴·폐업' 사업자 보유 시 필수		
	⑩ 청렴서약서, 개인정보 제공·수집동의서 등		
해당 시	⑪ 해외VC 추천서(영문) * '해외법인 미설립' 창업기업은 필수		
	⑫ 국외법인 설립 증빙 -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, 수출입신고필증 등		
	⑬ 기타 가점 관련 증빙서류 등		

* 가점 증빙서류는 **사업 신청 시 제출**하며,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

** 창업기업 여부 확인을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존에 발급받은 '창업기업 확인서' 보유 시 해당 서류로 확인 대체 가능(단, 사업공고일 기준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어야 함)

5

평가 및 선정절차

□ **평가 절차** : 총 2단계(서류→발표)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

*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,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

<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(안) >

① 요건검토	② 서류평가	③ 발표평가	④ 최종 선정
자격 검토 및 투자적절성 검증	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서면 평가 (1.5배수 내외 선정)	창업기업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(40분 이내)	선정 확정 및 (협약체결확약서 제출) 정부지원사업비 심의 후 최종 공고
'25.6월	'25.7월 중	'25.8월 초	'25.8월 말

신청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,
선정·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

※ 상기 일정은 신청기업의 수 등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□ **평가 방법**

- ① **요건검토** : 창업기업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신청자격, 해외 VC 요건, 가점사항, 투자유치(투자적절성 심의위원회) 등 적격여부 판단
- ②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(가점 포함) 및 발표 평가 대상자 확정

< 서류평가 가점 항목 >

구분	대상기업	점수	비고 (제출서류 등)
가점 (최대 3점)	① 팁스 성공 기업(프리팁스 포함)	1점	팁스 성공 공문
	② 글로벌 지원사업 성공(졸업) 기업	1점	제출 불필요 (창업진흥원 확인)
	③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[참고5]	1점	사업계획서 내용으로 확인
	④ (해외VC) '해외VC 글로벌' 펀드(KVIC 출자) 투자자	1점	제출 불필요 (주관기관 확인)
	⑤ (해외VC) 국내 지사·사무소 보유	1점	[붙임2] 참조

③ 발표평가 : 현지 경쟁력 확보, 글로벌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,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- 해외 VC의 후속 투자전략 및 지원계획 발표(5분 내외)를 포함하여 평가 시행
-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(동 사업 신청자)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,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글로벌 진출 의지 등에 대해 심층 평가

* 평가시간 : 40분 이내 (영상 5분 + 발표 10분 이내 + 질의응답 20분 이내)

④ 최종선정 :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

-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「2025년 글로벌 틱스」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

* 확약서 안내·교육(발표평가 대상자) → 확약서 배포(선정 예정자) → 확약서 수취

** 기간 내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(후보자)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

< 최종선정 대상자의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>

※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(기업)는 '협약체결확약서' 제출 요청*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(마지막 날 17시까지,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) 「글로벌 틱스」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, 위 발송일 기준

※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됩니다.

※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이 가능합니다.

※ 제출한 '협약체결확약서'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, 창업기업별 정부지원 사업비*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

*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

※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

-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

□ 평가지표

- 창업 아이템의 제품·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글로벌 진출 방향, 성장전략, 대표자 및 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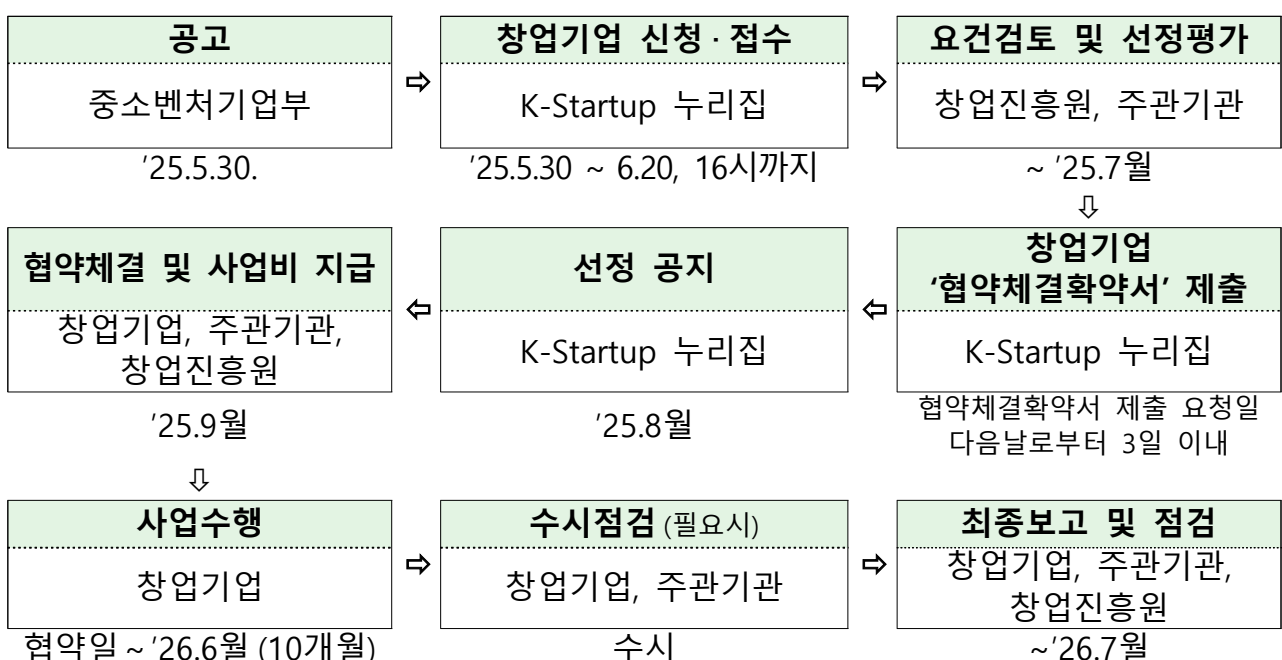
*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,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

< 서류·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>

평가항목	세부항목
문제인식	• 글로벌 시장진출 동기 및 목적 • 글로벌 목표시장(국가) 분석 현황, 창업아이템 현지진출 필요성 등
실행가능성	• 창업아이템 개선/전환(Pivot) 방안 • 창업아이템 현지화 및 차별화 방안
성장전략	• 현지 목표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경쟁력 확보 방안 등 • 구체적인 현지법인 설립 계획 및 진출 확대 전략 • 해외VC 등 후속 투자유치 전략, 지원(관리) 계획
팀(기업)구성	•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한(예정인) 글로벌 역량과 노하우 등

□ 사업 운영일정

※ 세부 일정은 대내·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신청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,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(창업진흥원 등)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(3년)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

- *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·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,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, 선정취소,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
- ** 동일·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
-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. 단, '25년도 이전의 글로벌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-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,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
- * 선정 완료 후 공동·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동 사업 신청자는 '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

□ 평가 중 유의사항

-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,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
-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,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
-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 (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)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
-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,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절차(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)에서 '제외' 처리됨
 - 단,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이미 '협약 체결확약서'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, 최초 '협약체결확약서'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(수행) 가능
-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,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, 「동 사업 세부관리기준」,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
-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,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'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·운영됨
- 동 사업의 수시·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

-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,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
 -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,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
 -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,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
 -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(사업비 계좌) 개설 및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한 사업비 지출(회계처리)이 가능 하여야 함
- *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능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-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,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

7

기타사항

□ 문의처

- (시스템 문의) 국번없이 1357
- (사업 문의) 주관기관 및 통합콜센터

구분	담당기관	담당자 연락처
주관기관	한국벤처투자 지역혁신팀	02-2156-2229, 2187, 2091
		globaltips@kvic.or.kr
전문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	(국번없이) 1357
홈페이지	www.k-startup.go.kr	

참고 1

창업 여부 기준표 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)

신청기업구분	상세 구분		창업여부
개인기업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타인으로부터 상속/증여	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	불인정
		이종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-	불인정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창 업
		-	창 업
		폐업 3년 초과	불인정
		폐업 3년 까지	창 업
법인기업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동종창업	불인정
	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
		-	창 업
	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후 창업 시	-	창 업
	창업(사업을 개시한 날부터) 7년 이내		창업 기본요건
	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후 창업 시	이종창업	창 업
		-	창 업
		폐업 3년 초과	불인정
		폐업 3년 까지	창 업
	동종전환	부도/파산 - 2년 초과	창 업
		부도/파산 - 2년 까지	불인정
		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	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
		-	창 업
	기존 개인사업자 유지	이종창업	불인정
		-	창 업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또는 최대주주	불인정
		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	창 업
	자회사 여부	법인주주(임원 포함)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% 초과 소유	불인정
	과점주주 여부	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% 초과 소유	불인정
	회사형태 변경	동종유지	불인정
		이종	창 업

- ※ 위 표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2조(창업의 범위)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, 반드시 규정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 국가법령정보센터 : law.go.kr
- ※ **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** :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(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)이고, 양도-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, 동종 업종, 양도기업(기존 개인사업자) 폐업 완료, 양도기업의 권리·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
- ※ **동종의 범위** : '한국표준산업분류(제10차)'를 기준으로 세세분류(코드번호 5자리)가 모두 일치하면 "동종"
*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: kssc.kostat.go.kr
- ※ **과점주주** :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
- ※ **신청가능 여부** : "창업여부"는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서 위 기준에 해당. 단,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가능
- ※ 기존 개인사업자의 폐업사실은 **폐업사실증명, 총사업자등록내역** 등을 통해 확인

참고 2**지원 제외 대상 업종**

- ▶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(기업)

NO.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일반유흥주점업	56211
2	무도유흥주점업	56212
3	카지노 운영업	91242
4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	91249
5	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	-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

참고 3**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목록**

※ '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글로벌 창업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(협약체결) 불가

* (주의)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,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

NO.	글로벌 창업지원사업명	소관 부처
1	·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(글로벌 액셀러레이팅, 해외실증(PoC))	중소벤처기업부
2	· K-스타트업 센터 사업	중소벤처기업부
3	· 선도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	문화체육관광부
4	· 관광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	문화체육관광부

참고 4

신산업 창업 분야

※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

- * 신산업 창업 분야 창업기업 : 「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」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 2024-2호) [별표1]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
→ 신산업 창업 분야 여부는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, 최종선정 과정 등에서 검토하며, 해당 분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

< 27개 신산업 창업 분야 >

인공지능	스마트 제조	드론·개인이동수단
빅데이터	시스템반도체	미래형 선박
5G+	자율주행차	재난/안전
블록체인	전기수소차	스마트시티
서비스플랫폼	바이오	스마트홈
실감형콘텐츠	의료기기	신재생에너지
지능형 로봇	기능성 식품	이차전지
CCUS(탄소포집·활용·저장)	우주	양자
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	차세대 원전	사이버 보안

참고 5

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

☞ 품목별 시장 및 기술환경 등 세부 분석 자료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홈페이지 (<http://smroadmap.smtech.go.kr/>) 참조 (※ 포털에서 "중소기업 기술로드맵" 검색)

10대 분야	세부 분류(예)
❶ 시스템반도체	로직·아날로그 IC, 마이크로컴포넌트
❷ 바이오·헬스	의약, 임상기술, 의료기기
❸ 미래모빌리티	전기·수소차, 자율주행
❹ 친환경·에너지	자원순환, CCUS, 친환경 신소재, 신재생, 이차전지, 에너지 절감
❺ 로봇	지능형·서비스 로봇, 스마트시스템
❻ 빅데이터·AI	컴퓨터비전,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, 고객데이터플랫폼, AIoT
❼ 사이버보안·네트워크	복호화, 블록체인, 5G, 무선통신, 클라우드, 메타버스, 모바일 엣지컴퓨팅
❽ 우주항공·해양	위성, 발사체, 기지국, 비행체, 첨단선박
❾ 차세대원전	원자로, 원전 재료, 안전기술
❿ 양자기술	양자컴퓨터, 양자센서, 양자통신

참고 6

글로벌 팁스 최종평가 기준

※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50조(창업기업등 최종평가)에 따라 글로벌 팁스 창업기업의 최종평가를 진행

③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창업기업등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사업추진 성과(매출, 고용, 지재권, 투자유치, 수출성과 등), 현장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"성공(최우수, 우수, 보통), "실패(미흡, 극히불량)"로 구분하며,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< 글로벌 팁스 성공지표(안) >

구분	기본요건	선택요건	판정방법
최우수	❶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❷ 현지법인 설립 완료	❶ 매출 : 증가율 20% or 60억원 ❷ 고용 : 증가율 20% or 20명 ❸ 후속 투자유치 : 50억원(선정 후) ❹ 해외VC 후속투자 : 자격요건의 2배 ❺ 수출 100만불 ❻ M&A ❼ IPO	2개 이상 해당
우수			1개 해당 or 선택요건(❶~❺) 1/2 2개 이상 해당
보통			선택요건(❶~❺) 1/2 1개 해당 + 정성적 성과
미흡	■ 사업계획 대비 목표 미달성, 성실히 사업을 이행한 경우		
극히 불량	■ 사업계획 대비 목표 미달성, 불성실히 사업을 이행한 경우 ■ 정당한 사유없이 휴·폐업한 경우		